

시립목동청소년센터 일요일 근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수당 적용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9
----------	----

2026년 3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청원자 : 정우철
- 나. 소개의원 :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 교육위원회)
- 다. 접수일 : 2026년 2월 6일
- 라. 회부일 : 2026년 2월 12일
- 마. 상정일 :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3월 11일 상정·의결(채택)

2. 청원요지

- 시립목동청소년센터 직원들은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근로수당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별표 6] 일·숙직비 지급기준에 따라 일괄 5만 원만 지급받고 있는 현실 개선을 요청하는 청원임.
- 청소년센터는 주말 및 공휴일에도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개방 등으로 직원들은 상시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숙직이 아닌 정상적인 근로 행위임.
-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 대비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보상체계 도입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해 줄 것과

- 시 산하 청소년시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무·보상체계의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요청함.

3. 소개의원 요지

-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 산하 시립목동청소년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근로수당을 적용받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별표 6] 일·숙직비 지급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5만 원만 지급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임.
- 본 청원이 제기하는 문제의식과 개선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서울시가 시립 청소년시설 전반의 휴일근로 실태와 보상체계를 점검하고,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청원은 단순한 수당 증액 요구를 넘어, 공공기관 노동의 정당한 가치 평가와 노동인권 보호라는 중요한 공익적 의미를 담고 있는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본 청원을 소개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부서 의견조치 결과¹⁾

- 제출의견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시립청소년센터는 「근로기준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2026년도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급여·수당을 지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말근무는 사업 담당자가 진행하며, 휴일근무수당 또는 대체휴무를 부여 ▪ 당직근무 및 대관업무는 당직근무자가 진행하며, 대체휴무 또는 당직수당을 지급
--
 - 각 센터에서는 직원들의 휴일 업무 및 당직근무에 대해 규정에 따라 급여·수당 및 대체휴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청원 내용을 적극 감안하여 상반기 지도 점검 시 근무·보상체계 전반을 특별점검하여 개선 사항을 살펴보겠음.

1) 청소년정책과-4252호('26.2.20.), 청원에 대한 부서의견 제출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가. 청원의 개요

- 본 청원은 서울시 산하 시립목동청소년센터(이하 “목동청소년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근로수당을 적용받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6]의 일·숙직비 지급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5만 원만 지급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시립 청소년시설의 근로환경 개선을 요청하려는 것으로,
 - 상위법인 「청원법」 제5조(청원사항)에 해당(제1호, 제4호)하는 청원사항으로 보이며, 시립 청소년시설의 「근로기준법」 준수 등에 대한 점검 및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동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청원요지 〉

- 시립목동청소년센터 직원들은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근로수당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별표 6] 일·숙직비 지급기준에 따라 일괄 5만 원만 지급받고 있는 현실 개선을 요청하는 청원임.
- 청소년센터는 주말 및 공휴일에도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개방 등으로 직원들은 상시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숙직이 아닌 정상적인 근로 행위임.
-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 대비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보상체계 도입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해 줄 것과
- 시 산하 청소년시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무·보상체계의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요청함.

※ 「청원법」 제5조(청원사항)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지방자치법」 제87조(청원의 심사·처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 결과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8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목동청소년센터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 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립 청소년시설로,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사단법인 한국 청소년재단, 이하 “한국청소년재단”) 하고 있으며,

- 목동청소년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 법인(한국청소년재단)과 근로계약을 체결(「근로기준법」 적용)하여 근무하고 있음.

※ 목동청소년센터 위탁 현황

1988년 개관 이후 재단법인 대한불교 조계종유지재단에서 35년간 운영하다가 수탁기관이 변경, 2023년부터 3년간 한국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의 시설로, 현원 39명(정규직 24명, 계약직 15명, 2026.1.30. 기준)의 직원이 59억 9천 4백만원 ('26년)의 예산으로 9개 분야, 24개 사업, 7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목동청소년센터의 정현원 〉

(단위 : 명, 2026.1.30. 기준)

구분	총계	정규직										무기계약		비정규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	고용	소계	무기계약	소계	계약	기타 (촉탁직)
정원	28	28	1	1	1	3	4	7	6	3	2	-	-	-	-	-
현원	39	24	1	-	-	2	4	13	-	-	2	2	2	15	8	7

〈 목동청소년센터의 조직도 및 업무 〉



업무지원팀	공사, 계약, 입찰, 회계업무, 기획 및 예산, 대관, 인사, 시설 등
청소년사업팀	청소년운영위원회, 학교연계사업 운영, 특화사업, 공모사업 등
평생교육팀	유아체능단 운영관리,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 및 관리 등
특성화사업팀	환경특성화 운영, 지역조직, 청소년전용시간제, 초등자치단 등
생활체육팀	생활체육시간강사 및 홈페이지 관리, 수영 수업 지도, 헬스장 및 가구필라테스 관리 등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나. 청원검토

- 청원인은 목동청소년센터 시설 운영상 불가피한 직원들의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가 단순한 '일·숙직(당직)'이 아닌 정상적인 근로행위(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안전관리, 행정 업무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휴일 근로보상) 적용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음.
- 다만, 본 청원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근로수당' 미적용, 일·숙직비만 지급)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 시립 청소년시설(목동청소년센터)에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판례(유권해석) 등을 통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는 근로자의 유급휴일 보장(1주에 평균 1회 이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에서 정하는 휴일 유급 보장),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는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보상, 제57조(보상 휴가제)는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등에 대한 보상 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임금 보상(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또는 보상 휴가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시 청소년시설 관리 지침(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매뉴얼) 및 청소년시설 예산 지침(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에서도 휴일 근무자에 대한 휴일 근로수당과 대체 휴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각 청소년시설에서 적용하고 있음.
-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2026년도 서울시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매뉴얼 (41페이지) 〉

관련법규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 연장근로수당 :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시간

나) 야간근로수당 : 현업근무자 중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자만 지급

다) 휴일근로수당 : 현업근무자중 휴일에 근무하는 자(휴일근무 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 제외)에게 지급

※ 지급대상은 휴일 근로수당 예산이 계상된 자로서 휴일에 특별히 근무한 자에 한하며 휴일을 정규 근무일로 하고 평일을 대체휴일로 하는 자가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동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편성방법

- 직급별인원 × 직급별 연장근로수당 평균지급단가 × 30시간 × 12월

연장근로수당 지급단가 산출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5(원이하 절사)

※ 209시간 :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1일8시간 주40시간 사업장의 월 유급처리시간 수

※ 청소년수련시설별 여건에 따라 편성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2026년도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 (12페이지) 〉

⑥초과근무수당	-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 지급대상: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직원		
	- 초과근무 수당종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대상	수당종류	지급기준
시설장 제외	시간외 근무수당		$(\text{초과근로시간}) \times (\text{월통상임금}/209) \times (1.5)$
	야근근무수당 (오후10시~ 익일 오전6시)		$(\text{야간근로시간}) \times (\text{월통상임금}/209) \times (0.5)$
상근직원	휴일** 근무수당	8시간 이내	$(\text{휴일근로시간}) \times (\text{월통상임금}/209) \times (1.5)$
		8시간 초과	$(\text{휴일근로시간}) \times (\text{월통상임금}/209) \times (2)$

*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경우
** 휴일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상 휴일

- 또한 서울시 청소년시설 관리 지침(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매뉴얼)에서 청소년시설
당직근무 실시(휴일 안전관리 등 목적) 및 보상(일직수당 지급 및 대체휴무 부여)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고,
- 목동청소년센터 자체 운영규정(「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시설 운영규정 - 운영규정, 취업규칙 등)에서 당직
근무에 관한 규정(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일직, 숙직, 당직을 명하여 근무)을 마련하고 있으며,
- 서울시 지침(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일·숙직비(1인 1일당 5만원)’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령) [별표 6]을
준용하고 있음.

〈 2026년도 서울시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매뉴얼 (42페이지) 〉

7) 기타수당

○ 일·숙직비

- 청소년시설은 휴일 안전관리 등 당직근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상은 일직수당 지급 및
실제 근무시간만큼의 대체휴무를 부여한다. 구체적인 금액 및 산정기준은 서울시 예산편성기준을
따른다.

※ 참고(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3조 당직의 구분)

〈 목동청소년센터 운영규정 (124페이지) 〉

제5장 당직 및 휴일·시간외근무

제23조(당직근무)

1.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일직, 숙직, 당직을 명하여 근무할 수 있다.
2. 일직, 숙직 그 외의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음주 및 기타 품위손상 등 당직근무에 지장이 되는 일로 인하여 당직준수 수칙, 규칙을 어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26년도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 (25페이지) 〉

(2) 일·숙직비

(가) 경비성격 :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 보상적 경비

(나) 기 준 액 : 일·숙직비 기준단가에 의거 시설당 2인 근무원칙 단, 동일건물에 2이상 기관의 경우 통합 운영(종사자 15인이하의 경우 1인 근무)

- 일직비 : 50,000원(1일당) × 근무일수 × 1명
- 숙직비 : 50,000원(1야당) × 근무일수 × 1명

※ 수위, 기계실, 보일러실 근무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다) 집행방법

- 일·숙직 명을 받고 근무하는 자에 대한 수당
- 자체 설정한 기준단가(기준액 이내)에 의거 일·숙직담당부서에 기관단위로 계상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6] 〉

별표 6 일·숙직비

① 경비성격 :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

② 기 준 액

구 분	기 준 액	
	단위	단가
일직비	1일당	50,000원 이내
숙직비	1야당	50,000원 이내

○ 다만, 기준액은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가능

※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일당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등)
-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운영자에게 청소년시설의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기준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
 - ②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정·변경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목동청소년센터 당직근무 근무수칙 〉

평일당직 18시~21시 *12시 출근	
시간	내용
17:00~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식
18:00~19: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순회 점검 (3층) - 강의실 및 공용공간 내 전기·전자기기 작동 여부 및 안전 상태 점검 - 소등 및 기기 전원 차단 확인 등 에너지 절약 상태 확인 - 미사용 공간 내 무단 사용자 퇴실 안내 및 이상 유무 점검 - 시설 창문, 블라인드 원위치 등 시건 장치 확인 ■ 전화·인원 응대 및 비상상황 대응
19:40~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처 키박스 업무지원
20:10~2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순회 점검 (1층~3층) - 강의실 및 공용공간 내 전기·전자기기 작동 여부 및 안전 상태 점검 - 소등 및 기기 전원 차단 확인 등 에너지 절약 상태 확인 - 미사용 공간 내 무단 사용자 퇴실 안내 및 이상 유무 점검 - 시설 창문, 블라인드 원위치 등 시건 장치 확인 ■ 전화·인원 응대 및 비상상황 대응
2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직근무일지 작성 후 퇴근

일요당직 9시~18시 * 9시 출근		
시간	내용	점검사항
9:00~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응대, 인원안내, 비상시 비상연락망 가동 등 ■ 시설 순회 점검 및 무단출입자 퇴실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구수업(일요일) 관할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숙지) ■ 인원, 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망 가동. ■ 교육 후 전기장치 상시 확인(냉·난방기, 컴퓨터 전원 및 강의실 전등 등)
11:00~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심식사 	
12: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전용공간 안전 근무 	
17:00~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순회 점검 및 무단출입자 퇴실조치 ■ 당직근무일지 작성 후 퇴근 	

- 결론적으로, 관련 대법원 판결(2015다213568 판결) 및 고용노동부 법령해석(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090호, '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여부')을 고려할 때, 직원들의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가 '일·숙직(당직)' 근무의 범위를 벗어나 '본래의 정규 근무(통상근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구체적인 업무내용, 근무실태 등)를 확인하여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5다213568 판결」

일반적인 숙·일직 근무가 주로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한 시설 내 대기 등 업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숙·일직 시 행한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 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여부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근로개선정책과-3090, 2014.5.28.)

일반적인 숙·일직 근무가 주로 정기적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다만, 일·숙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 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임. (중략) 근로자의 정상적인 업무가 연장된 경우인지 및 그 내용과 질이 통상근로와 같이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내용, 근무 실태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한편, 평생교육국(청소년정책과)은 시립청소년센터는 「근로기준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2026년도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급여·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 주말근무는 사업 담당자가 진행하며, 휴일근무수당 또는 대체휴무를 부여
- 당직근무 및 대관업무는 당직근무자가 진행하며, 대체휴무 또는 당직수당을 지급

- 각 센터에서는 직원들의 휴일 업무 및 당직근무에 대해 규정에 따라 급여·수당 및 대체휴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청원 내용을 적극 감안하여 상반기 지도 점검 시 근무·보상체계 전반을 특별점검하여 개선 사항을 살펴보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1. 의 견 서 : 별 첨

[별첨]

의견서

- 청원명 : 시립목동청소년센터 일요일 근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수당 적용에 관한 청원
- 처리하여야 할 기관 : 서울특별시(평생교육국)
- 채택 의견
 - 본 청원은 시립목동청소년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근로수당을 적용받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6]의 일·숙직비 지급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5만 원만 지급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시립 청소년시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무·보상체계의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요청하는 것으로,
 - 대법원 판결(2015다213568 판결) 및 고용노동부 법령해석(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090호, '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여부')을 고려할 때, 직원들의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가 '일·숙직(당직)' 근무의 범위를 벗어나 '본래의 정규 근무(통상근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구체적인 업무내용, 근무실태 등)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 시립 청소년 시설의 전반적인 근무·보상체계의 점검 등을 통해 근로환경 개선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바,
 -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동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함.

청 원 요 지 서

접수번호	39	접수연월일	2026. 2. 6.
청원인	주소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	
	성명	정우철	
소개의원	채수지	소속위원회	교육
건명	시립목동청소년센터 일요일 근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수당 적용에 관한 청원		
소관위원회	행정자치		
<p>○ 시립목동청소년센터 일요일 근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수당 적용에 관한 청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립목동청소년센터 직원들은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근로수당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별표6(일·숙직비 지급기준)에 따라 일괄 5만 원만 지급받고 있는 현실 개선을 요청하는 청원임- 청소년센터는 주말 및 공휴일에도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개방 등으로 직원들은 상시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숙직이 아닌 정상적인 근로행위임-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 대비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보상체계 도입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해 줄 것과- 시 산하 청소년시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무보상체계의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요청함			